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4년 4월 27일

○ 회부일자 : 2004년 4월 30일

3. 제안이유

- IT산업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로 사이버 공간을 통한 화상회의 등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실시간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이버 회의 참석자에 게도 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 또한,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과 직접 자기소관 업무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된 공무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 행정심판위원회에게만 지급되던 안전검토 수당을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다른 위원회의 경우에도 지급하려는 것으로서,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전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안전심사 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에 법령이나 조례·규칙 및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도 포함.

(안 제2조)

나. 수당 등 지급기준 규정. (안 제3조)

-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토록 함.(안 제3조 제1항)
 - 공무원은 직접자기 소관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사이버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도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으로 부터 미리 안전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제2항)

5. 검토의견

-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안 발생 시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고,

사이버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와 공무원이 직접 자기 소관업무 이외의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출석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 보고하는 위원에게는 심사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주관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관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 임 :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